

## 폐합성수지류 등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계약조건

- 1) 본 특수계약조건은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의 처리에 적용한다.
  - 폐가구, 폐가전제품, 소파, 매트리스 등 대형폐기물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 장판, 스폰지, 잡병류, 파손된 거울, 유리 등 기타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 등에 무단투기된 반입불가 폐기물
- 2) 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
  - ①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한 업체.
- 3)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시행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재 위탁 및 매립 할 수 없으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 있다.
- 4)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처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시 2016년 계약단가로 2016년 계약체결업체에서 다음연도 계약 체결 시까지 계속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반입불가 폐기물을 24시 전일 “계약상대자”의 처리시설로 반입·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편의에 의해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 또한 다른 발주처의 폐기물보다 우선하여 반입·처리하여야한다
- 6)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 7) 계약자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확인을 위하여 폐기물의 반입일자, 반입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처리확인서(처리현장 계근표 포함)를 주관부서에 기성 준공검사원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 8)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반입 및 처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해 “발주부서”에게 폐기물 반입 및 처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손실금액 산정은 “발주부서”가 처리한 비용의 2배로 하고, 변상금액은 익월 “계약상대자” 청구금액에서 감한다.
- 9) “계약상대자”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비 등의 미비로 인하여 “발주부서”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10) 위탁처리 업무 수행 중 “발주부서”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계약상대자”의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11) ① “발주부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부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발주부서”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이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3. “계약상대자”이 수탁한 물량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이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5. “발주부서”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6. 기탁 계약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에정일로부터 **3개월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부서”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도 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은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가 결정되었어도 반입불가폐기물 후임업체가 지정될 때 까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부서”에게 귀속된다.
- 12) ① “계약상대자”는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